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6239 판결 [구상금 지급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승환, 신우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4,453,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2,781,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재판장 판사 김 룡, 판사 이종훈, 판사 김연수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의 발행 주식(114,000주) 중 60,000주(52.63%)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갑 제1호증)이자 피고의 설립일인 2021. 8. 4.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4. 11.부터 2022. 5. 12.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2. 피고의 대출 및 원고의 연대보증, 물상보증 제공

가. 피고는 자금이 필요하여 3억원을 2021. 11. 12.자로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원고는 피고가 대출받는 3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

나. 위 연대보증과 더불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거주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변경된 청구원인

1. 채권 내역

소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잔액 293,766,06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고의 변제

가. 소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채권자(C 조함)는 2023. 7. 10.자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갑 제8호증).

목적번호	소재지	목적구분	비고
1	경기도 부천시 []	임차권	이종국

1. 1층지상 1층의 전세
 [] 부동산 [] 부동산
 전세부담금 전세금
 1. 전세금 전세금 : []
 2. 전세금 전세금 : []
 전세부담금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 전세금
 전세금 전세금 : 70000원 54.75

나. 그리고 2024. 2. 6.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가 C 조

합계 2024. 2. 1.자로 합계 32,781,851원을 일부 변제(갑 계11호증)하여
채권자인 C 조합이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매사건검색

1) 검색조건: 법원: [무엇지원 | 사건번호] [검색] [이전] [다음]

사건내역 | 거래내역 | **양전/충당내역**

※ 양전/충당내역

접수일	연수내역	결과
2023.07.12	통계소 환00000 0000 000 통기통통 제출	
2023.07.21	감정인 [] 원황포시보고서 제출	
2023.07.24	감정인 [] 감정물가서 제출	
2023.08.02	소유자 [] 감정및복사신청서 제출	
2023.08.08	채권자 [] 보정서 제출	
2023.08.29	근재담당자 [] 채권계산서 제출	
2023.09.31	가압류권자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2023.09.08	요부권자 [] 교부청구서 제출	
2024.02.02	채권자 []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3. 원고의 사전 구상권 행사 및 사후 구상권 발생

가. 원고는 소장에서 사전 구상권으로 피고에게 대출 잔액 293,766,061원
과 이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에 의
한 연체이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2024. 2. 1.자로 합계 32,781,851원을 채권자인 C 조합
에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한 32,781,851원에 대해서는 사후구상권이 발생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대출 잔액 293,766,061원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2024. 1. 31.

까지(324일 임니다) 연 9%의 이자가 23,469,091원¹⁾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2024. 2. 1.자로 변제한 32,781,851원은 이자 23,469,091원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 9,312,760원(= 32,781,851원 - 23,469,091원)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2024. 2. 1. 현재 원금은 284,453,301원(= 293,766,061원 - 9,312,760원)이 남습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구상권으로 284,453,30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후 구상권으로 2024. 2. 1.자로 대신 변제한 32,781,851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 상당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 진행 중인 상태로 화목한 가정이 와해되었습니다. 부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